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286호

「식품위생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해평가” 용어와 「식품안전기본법」 상 “위해성 평가” 용어가 같은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두 법률간 용어를 달리하고 있어 “위해성 평가”로 용어를 통일하고,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교육의 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한편,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의 관리강화를 위해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평가, 연장 및 지정취소 등의 근거 규정을 법률에 마련하여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의 절차상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편,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있는데, 동 검사를 실시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검사결과 부

적합 판정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마련하여 부적합 용수를 사용한 경우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해평가 용어를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위해성평가로 변경하여 법률 용어를 통일하고자 함(안 제15조·제15조의2·제21조·제44조 등)

나. 영업자 외에 유흥종사자를 들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삭제하여 교육이수 의무 대상자 정비(안 제41조)

다.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지정 연장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안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4)

1) 현재 총리령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범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절차, 평가 등에 관한 근거 신설(안 제41조의2)

2)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3년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41조의3)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거나, 교육실적 등이 현저히 부실하여 교육기관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41조의4)

라. 영업자 등으로부터 지하수의 검사요청을 받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은 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
이 보고하도록 함(안 제46조의2)

마. 조리사 및 영양사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근거 마련
(안 제56조)

1)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는 이 법률에서
집단급식소에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상자로 명확히
함

2) 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과 관련하여 식품위생교육기관 규정(안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
41조의4)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바. 품목제조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품목제조를 하는 경우 영업허가취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75조제1항제1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
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
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kmlee0507@korea.kr

- 팩스 : (043) 719 - 2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
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전화: 043-719-2016, 팩스: 043-719-200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위해평가”를 각각 “위해성평가”로 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위해평가”를 각각 “위해성평가”로 한다.

제21조제2항 본문 중 “위해평가”를 “위해성평가”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영업자 및 유홍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을 “영업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영업자 및 종업원”을 “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제41조의2를 제41조의5로 하고,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1조제1항, 제2항, 제41조의5제8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및 공유주방 위생관리책임자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이하 “식품위생교육기관”이라 한다)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제5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 조합
2.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3. 「민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
 - ② 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내용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식품위생교육기관은 정해진 교육시간을 준수하고, 교육에 관한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정된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인력·시설·설비 보유현황 및 활용도, 교육운영과정 운영실태 및 교육서비스의 적절성·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그 평가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교육시간을 위반하여 교육하는 등 교육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평가방법, 교육내용·시기·방법(교육의 생략, 교육시간의 단축 등을 포함한다), 실시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3(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의 유효기간 및 연장) ①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3년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정의 유효기간 및 연장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4(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육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정지기간에 교육을 한 경우
4. 식품위생교육 수료증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경우

6. 제41조의2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교육실적 및 교육내용 등이 현저히 부실하여 교육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7. 제41조의2제7항 및 이 항의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제1항제5호 중 “위해평가”를 “위해성평가”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먹는물 검사결과 부적합 사실 통보 의무 등) 법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업자 등으로부터 검사요청을 받아 검사를 실시한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제1항 단서 중 “영양사”를 “영양사(법 제51조제1항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두고 있는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제

1항에 따른 교육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교육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41조의2제2항부터 제41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교육기관”은 “제56조제3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보고 “지정”은 “위탁”으로 본다.

제75조제1항제10호의2 중 “제41조의2제1항”을 “제41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제73조제1항 또는 제74조제1항”을 “제73조제1항, 제74조제1항”으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제76조제1항”으로 한다.

제81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제5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8조제2항제9호 중 “위해평가”를 “위해성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56조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아니한 조리사 및 영양사를 종사하게 하지 말 것

제101조제3항제1호의2 중 “제41조의2제3항”을 “제41조의5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3 중 “제41조의2제4항”을 “제41조의5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4 중 “제41조의2제7항”을 “제41조의5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5 중 “제41조의2제8항”을 “제41조의5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41조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 제15조의2, 제21조, 제44조, 제45조의2, 제46조의2, 제88조의 개정규정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4, 제56조의 개정규정 : 2024년 1월 1일

제2조(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41조제8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교육기관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먹는물 검사결과 통보의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영업자가 제44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 후 식품등에서 제4조제2호에 따른 유독·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품등의 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⑦ (생략)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통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생략)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

----- 위해성평가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
----- 영업자는 -----

②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⑥ (현행과 같음)

⑦ -----

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인 경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 영업자 -----

<삭 제>

제41조의2(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1조제1항, 제2항, 제41조의5제8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및 공유주방 위생관리책임자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이하 “식품위생교육기관”이라 한다)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제5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 조합

2.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3. 「민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내용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식품위생교육기관은 정해진 교육시간을 준수하고, 교육에 관한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정된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인력·시설·설비 보유현황 및 활용도, 교육운영과정 운영실태 및 교육서

비스의 적절성·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그 평가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교육시간을 위반하여 교육하는 등 교육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평가방법, 교육내용·시기·방법(교육의 생략, 교육시간의 단축 등을 포함한다), 실시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3(식품위생교육기관의

<신 설>

<신 설>

지정의 유효기간 및 연장) ①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3년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정의 유효기간 및 연장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4(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적인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육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정지기간에 교육을 한 경우
4. 식품위생교육 수료증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경우
6. 제41조의2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 교육실적 및 교육내용 등이 현저히 부실하여 교육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7. 제41조의2제7항 및 이 항의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5 (현행 제41조의2와 같음)

제41조의2 (생략)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4. (생략)

5.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제조·가공·판매·수입·사용 및 운반하지 말 것

6. ~ 8. (생략)

② ~ ④ (생략)

<신설>

1. ~ 4. (현행과 같음)

5. ----- 위해성평가-----

6.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의2(먹는물 검사결과 부적합 사실 통보 의무 등) 법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업자 등으로부터 검사요청을 받아 검사를 실시한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③ (생략)

<신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제56조(교육) ① -----

영양사(법 제51조제1항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두고 있는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말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제1항에 따른 교육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교육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41조의2제2항부터 제41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교육기관”은 “제56조제3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보고 “지정”은 “위탁”으로 본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
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
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
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
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
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
할 수 있다.

1. ~ 10. (생 략)

10의2.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
한 경우

11. 삭 제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제41조의5제1항

12. ~ 16. (생 략)

17.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 제3항, 제73조제1항 또는 제
74조제1항(제88조에 따라 준
용되는 제71조제1항, 제72조
제1항·제3항 또는 제74조제1
항을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
을 위반한 경우

18.·19. (생 략)

② ~ ⑤ (생 략)

제81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
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1의2. 삭 제

2. ~ 4. (생 략)

제88조(집단급식소) ① (생 략)

②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
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
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12. ~ 16. (현행과 같음)

17. -----
----- 제73조제1항, 제74조제
1항 -----

-- 포함한다) 또는 제76조제1
항-----

18.·19.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1조(청문) -----

1.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식품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제5
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2. ~ 4. (현행과 같음)

제88조(집단급식소) ① (현행과
같음)

② -----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8. (생 략)

9.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사용·조리하지 말 것

10. (생 략)
<신 설>

11. (생 략)
③ ~ ⑦ (생 략)

제101조(과태료)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의2.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위생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1의3. 제41조의2제4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 선임·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 ~ 8. (현행과 같음)

9. ----- 위해성평가-----

10. (현행과 같음)

1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56조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아니한 조리사 및 영양사를 종사하게 하지 말 것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01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41조의5제3항-----

1의3. 제41조의5제4항-----

1의4. 제4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직무 수행내역 등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관한 자

1의5. 제41조의2제8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삭 제

2의2. ~ 6.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1조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 4. (생 략)

⑤ (생 략)

1의4. 제41조의5제7항-----

1의5. 제41조의5제8항-----

2의2. ~ 6. (현행과 같음)

④ -----
-----.

1. 제41조제1항-----

2. ~ 4.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